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 4. 22 선고 2019나12577(본소), 2019나12584(반소) 판결 [지체상금
등 청구의 소 · 공사대금]

재판경과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 4. 22 선고 2019나12577(본소), 2019나12584(반소)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가합2409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빈, 송경한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득수

피고, 피항소인1. C

2. D

3. E

4. F

5. H

6. I

7. J

8. K

9. L

10. M

11. N

12. O

변론 종결 2021. 3. 4.

판결 선고 2021. 4. 22.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가합2409(본소), 2019가합2437(반소)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별지 1] 채권양도 목록 기재 위 각 피고별 채권양도계약에 기한 각 양수금 채무는 [별지 1] 채권양도 목록의 '안분한 금액'란 기재 위 각 피고별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본소청구, 위 가.항 기재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위. 가항 기재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반소피고)가, 30%는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B(이하 '피고 B'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별지 1] 채권양도 목록 기재 채권양도계약에 기한 각 양수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피고 B는 원고에게 96,765,8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 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G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고, 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 B에 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 B에게 101,891,3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제1심 판결의 반소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B: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 B에게 98,536,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5쪽 2행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제1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 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 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설계를 변경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가격 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2. 공사가격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3.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 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 제1심 판결 6쪽 표의 7행부터 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계사 공사 붙임

1. 옹벽 기초 위 펜스 및 기초 펜스, 방진벽 설치
8. 출입구 방열도어 설치, 내부 철제 문짝 설치
9. 쿨링 패드 벽체(1.5m 이중벽), 지붕, 배기팬 지붕 설치
11. 초타임 콘트롤 및 센서 설치(호완 관계 확인)
12. 쿨링 패드 시공(준공 후)
13. 쿨링 패드 문짝 랙기어 시공
15. 급이기, 급수기, 모이통, 사일로, 건축주 협의 후 선정
17. 기름난방기 설치(동당 5, 6개소 설치)
21. 배수로 U형 설치
26. 외부 바닥 콘크리트, 와이어 메쉬, 기계 미장
27. 전기 외선 및 인터넷 설치
29. 출입구 대문 스텐 자바라 설치
30. 각 동 2.5m 관리실 시공
31. 설계비, 감리비 포함

○ 제1심 판결 6쪽 12행 "1,259평"을 "1,259평(설계도면에 기재된 면적은 4,136.94m²)"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6쪽 마지막 행 "[별지]"를 "[별지 1]"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7쪽 3행 "그 무렵"을 "같은 날"로 고친다.

2. 본소 및 반소 청구원인의 요지

가. 본소 청구원인

1) 피고 B에 대한 본소청구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 90만 원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하기로 합의한 다음, 계약 체결 당시 예정된 1,259평을 기준으로 합계 11억 3,300만 원(= 1,259평 × 90만 원, 10만 원 이하 버림)으로 정하였으나, 이 사건 양계장에 관한 건축허가 신청이 반려된 후 그 연면적을 1,146평으로 감축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은 1억 170만원[= (1,259평 - 1,146평) × 90만 원]이 감액되어 10억 3,130만 원(= 11억 3,300만 원 - 1억 170만 원)이 되었다. 그리고 피고 B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고,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 없어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도 없으므로, 원고는 위 공사대금과 별도로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위와 같이 산정된 이 사건 공사대금 10억 3,130만 원에서, ① 원고가 피고 B를 대신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845,041,403원(이하 '직불비용'이라 한다), ② 피고 B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미시공하거나 오시공하여 원고가 직접 이를 시공하거나 하자를 보수한 비용 192,270,000원(이하 '하자 관련비용'이라 한다), ③ 피고 B가 2017. 12. 27.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여 발생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 약정 준공일 다음 날인 2017. 10. 1.부터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된 2017. 12. 27.까지 88일간의 지체상금 90,754,400원(= 1,031,300,000원 × 1/1000 × 88일)을 각 공제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할 이 사건 공사대금은 없는 반면, 오히려 피고 B가 원고에게 96,765,803원(= 1,031,300,000원 - 845,041,403원 - 192,270,000원 - 90,754,40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위와 같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 모두 공제되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각 일부를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양수금 채무(이하 '이 사건 양수금 채무'라 한다)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그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나. 반소 청구원인

피고 B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당시 원고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 90만 원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하기로 합의하거나, 설계변경 후 별도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감액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양계장의 연면적이 감소하였더라도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실제 공사량이나 공사내역이 실제로 감소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공사대금을 감액할 이유도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 이 사건 공사대금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11억 3,300만 원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① 이 사건 양계장의 설계를 변경하고 다시 건축허가를 받느라 착공이 늦어진 것은 건축주인 원고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고, 이처럼 착공이 늦어진 탓에 기초공사를 할 시점이 장마철에 접어들어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사정은 피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정일 뿐만 아니라, 원고도 당시 이를 양해하였으며, 더욱이 2017. 12. 27. 피고 B가 이 사건 양계장을 준공하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대로 1개월 이내에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아 일부 잔여공사가 늦어지게 된 것이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② 원고가 주장하는 미시공 부분은 존재하지 않거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며, 그 밖에 미시공 내지 하자 that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지체상금이나 하자 관련비용 등을 공제할 수는 없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807,211,403원¹⁾을 하도급업자들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은 있고, 피고 B가 이 사건 채권양도를 통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나머지 피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에 상응하는 합계 337,197,230원의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각 돈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101,891,367원[= (11억 3,300만 원 × 1.1) - 807,211,403원 - 337,197,2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3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11쪽 1, 2행의 "1,229평"을 "1,259평"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11쪽 10행부터 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와 같은 연면적 평당 90만 원의 기준은 단지 이 사건 공사대금의 총액을 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포함된 건축공사표준계약 일반조건 제16조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공사대금이 조정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감정인 AF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연면적의 감소로 피고 B가 수행하여야 할 이 사건 공사의 내용이 어느 정도 감소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하나, 그 감소 물량이나 계약금액의 조정에 적용할 내역서상 단가 또는 내역서에 없는 신규 비목의 설계변경당시 단가 등에 대한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일반조건 제16조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대금이 10억 3,130만 원으로 감액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 12쪽 8행의 "있고," 다음부터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 B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가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하고 이는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무관하므로(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도1414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B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 B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를 들어 부가가치세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 제1심 판결 14쪽 표 아래 1행의 "중 1,900만 원"을 삭제하고,2) 같은 쪽 표 아래 4행에 "올바 제4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15쪽 5행의 "그 무렵"을 "같은 날"로 고치고, 같은 쪽 6행의 "㉓"부터 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③ 원고는 2018. 3. 12. 제1심 피고 G(이하 'G'라고 한다)와 추후 피고 B와의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정산 결과에 따라 G에게 위 3,800만 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2018. 4. 11. G에게 3,8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④ G는 위 돈을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위 돈 중 1,900만 원에 대하여는 "위 금액을 영수함. 단, 위 금액은 피고 B가 G에게 채권양도하는 채권양수도계약에 따라 원고가 G에게 지불하는 것임."이라는 내용의 영수증을, 나머지 1,900만 원에 대하여는 "G가 원고로부터 1,900만 원을 대여한다. 단, 동 금액이 피고 B의 잔존 채권에 포함되어 있으면 피고 B와 원고의 정산으로서 위 채무의 변제를 갈음하되, 잔존 채권이 부인되는 경우에는 G가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직접 반환하여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 B가 G에 원고에 대한 3,8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 후 원고가 G에게 3,800만 원을 지급한 점, ② G가 작성한 영수증에도 1,900만 원은 채권양수도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불하는 것이라고 기재된 점, ③ 나머지 1,900만 원에 대하여 영수증이 아닌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 B가 G에게 양도한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G에게 지급한 3,800만 원은 이 사건 채권양도 이후 원고가 G에게 이 사건 양수금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공사대금에서 직접 공제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 15쪽 16행부터 16쪽 1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16쪽 2행부터 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하자 관련비용의 공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 내지 28, 30, 3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A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양계장에 [별지 2] '하자 항목'란 기재와 같은 미시공 또는 오시공의 하자가 존재하는 사실 및 그 하자를 모두 보수하는 데에 합계 126,73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는 '하자 항목'란 기재와 같은 하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계약의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개별적인 항목에 대한 판단 내용은 [별지 2]의 '피고의 주장 및 판단'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위 하자보수비용을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한편 원고는, 원고가 직접 시공한 펜스 비용 40,480,000원 및 출입구 방열도어 재시공비용 25,060,000원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직접 시공한 펜스 비용은 [별지 2] 순번 10번 항목과 중복되고, 출입구 방열도어 재시공비는 [별지 2] 순번 24번 항목과 중복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 18쪽 13행부터 2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된 주요 원인은 당초 작성된 설계도면을 기초로 한 건축허가신청이 행정청에 의해 반려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 B가 당초 설계면적을 4,136.94m²(약 1,259평)로 정한 것은 원고와의 협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양계장의 설계에 앞서 피고 B에게 종래 이 사건 부지에서 운영해 온 오리 농장의 용적을 산정용 연면적을 알려주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 B가 설계한 설계도면이 법령의 명시적인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양계장의 건축 허가를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달려 있으므로 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된 것을 전적으로 피고 B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당초 공사 기간이 장마철과 겹치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체상금은 위 109,674,400원에서 20%를 감액한 87,239,520원(= 109,674,400원 × 80%)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 제1심 판결 19쪽 1행부터 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4) 소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대금 12억 4,630만 원에서 원고가 직불한 비용 807,041,403원, 하자보수비용 126,730,000원, 지체상금 87,239,520원을 각 공제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공사대금은 225,289,077원(= 12억 4,630만 원 - 807,041,403원 - 126,730,000원 - 87,239,5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무의 변제기로서 이 사건 양계장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후인 2018. 1. 27.의 다음날인 2018.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남게 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 B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비용이 나머지 공사대금을

초과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본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채권양도 통지 등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 양수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한 피고 B의 각 채권양도통지가 2018. 3. 8. 원고에게 동시에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나머지 피고들(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들'이라 한다) 및 G가 이 사건 채권양도를 통해 피고 B로부터 양수한 채권의 합계액 337,197,230원이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해야 할 나머지 공사대금 225,289,077원 및 이에 대한 2018. 1. 28.부터 채권양도통지일인 2018. 3. 8.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다.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 사이에는 법률상 지위의 우열이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225,289,0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피고들 및 G에게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야 하고(채권양도계약서의 문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채권양도계약일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도 원금과 함께 양도된 것으로 보인다), 그중 공사대금 원금의 안분액을 계산하면[별지 1] 채권양도 목록의 '안분한 금액'란 기재와 같다.3)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은 별지 표의 '안분한 금액'란 기재 각 피고별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들이 그 금액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할 이익도 존재한다.

4.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공사업자인 피고 B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여 그 무렵 원고가 이 사건 양계장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 B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12억 4,63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하였으며, 그 대금의 지급 중기가 이 사건 양계장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후인 2018. 1. 27.인 사실, 반면 원고가 피고 B를 대신하여 피고 B의 하수급인 등에게 807,041,403원을

직불해 준 사실, 피고 B에 대하여 하자보수비용으로 126,730,000원, 지체상금으로 87,239,520원의 지급을 구할 채권을 취득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공사대금 12억 4,630만 원에서 원고가 직불한 비용 807,041,403원, 하자보수비용 126,730,000원, 지체상금 87,239,520원을 각 공제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공사대금은 225,289,077원(= 12억 4,630만 원 - 807,041,403원 - 126,730,000원 - 87,239,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8.부터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남게 되는데, 피고 B가 2018. 3. 8. 피고들 및 G에게 위 나머지 공사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액을 초과하는 것이 계산상 명백한 합계 337,197,230원의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B의 반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본소청구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의 본소 중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 및 제1심 판결의 반소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판사오경미

판사홍승모

판사정순열

별지

- 1) 2021. 3. 2.자 준비서면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 B는 원고가 주장하는 공제 대상 직불비용 중 합계 807,041,403원 부분에 한하여 이를 다투지 않고 있기는 하나, 반소를 제기하면서 위 금액을 807,211,403원으로 산정하여 반소 청구금액을 계산하였다.
- 2) 원고는 제1심에서는 제1심 피고 G에게 지급한 3,800만 원 중 1,900만 원은 대여금이고,

나머지는 원고가 직불한 금액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3,800만 원 전액이 원고가 직불한 금액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3) 계산식 = 이 사건 공사대금 225,289,077원 × (각 양수채권액 / 양수채권액 합계
337,197,230원)